

# 『2023년 부산광역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 (00:00) ~ 2024년 1월 31일 (24:00) (1년)
- 보험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부산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부산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산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급성감염병사망	부산광역시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 보장)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자연재해사망	부산광역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부산광역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 ◆ 보장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것을 의미함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이하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나.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이하 ‘9종 건설기계 “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스쿨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300만원	6급	200만원
7급	150만원	8급	100만원	9급	80만원
10급	60만원	11급	50만원	12급	40만원
13급	20만원	14급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보장연령: 만15세~만80세)**

1)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 ※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중 1급~3급을 말하며, 일부 감염병은 제외(1급~3급 감염병중 2급의 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카바네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원숭이두창 / 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_자세한내용은 약관 참조)

- ※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 자연재해 사망**

1)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 과 “열사병 및 일사병” 을 말함

-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1)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수습 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조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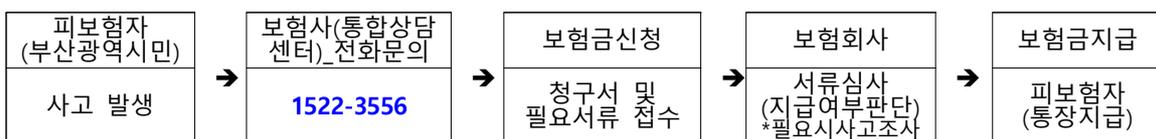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문의 : 통합상담센터 (디비손해보험 권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발생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주세요.</li> <li>▪ 문의사항이 있을때에도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문의 : 1522-3556</li> <li>- 팩스 : 0507-774-0662</li> </ul>
--